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조 병 모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Disabled Prosthesis and Orthosis Insurance System in Korea

Byeong-Mo Cho, C.P.O., Ph.D.

Department of Prosthetics and Orthotic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This study analyzed the items of prosthesis and orthosis and non-benefit items provided to the disabled, items excluded from benefits, and the benefit insurance system, and studied the improvement methods. The main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signate the professionals and duties of prostheses and orthoses(assistive devices) for the disabl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clear announcement on the professionals and duties of assistive devices for the disabled. Third, items excluded from insurance benefits are included or excluded sequentially by conducting an annual survey. Fourth, for quality control, non-paid items and maintenance equipment repair costs are included in the payroll. Fourth, the insurance systems implemented independently by various ministries should be integrated. (J Korean Soc Prosthet Orthot 2022; 16: 1-5)

Key Words: Prosthesis and orthosis, Insurance system, Assistive device, Disabled

서 론

장애인 또는 사고나 질환으로 일시적 장애를 지닌 비장애인은 보장구(재활보조기구, 기기)를 이용하면 일상생활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보장구는 장애유형에 따라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의 기능을 도와주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요소(용품)이다. 보장구와 재활보조기구 사용 목적은 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물리적 효과 외에 장애인과 일시적 장애를 지닌 사람이 교육, 직업,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쉽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1,2}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서 재활보조기구라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및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0. 1. 18.>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

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에서는 보철구(補綴具),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의지와 기타 보철구로 보장구(補裝具)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다 2000년에 재활보조기구로³ 현재는 보조기기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진, 유지,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성품 혹은 개조하거나 주문 제작된 장치나 제작된 도구를 보조공학기구(기)라 지칭하고 있다.⁴ 위와 같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을 돕고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활동(activity)과 참여(participation)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권선진,¹ 문인근,² 이금희,⁵ 정민예 등,⁴ 이수연,³ 이태서,⁶ 정세욱,⁷ 이근민과 이진현,⁸ 김동기,⁹ 이준희의¹⁰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에서는 그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과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보험 또는 자비로 구입하고 있거나 보장구 구입비용 때문에 필요함에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50% 이

접수일: 2022년 8월 1일, 게재승인일: 2022년 9월 14일

교신저자: 조병모, 경기 평택시 삼남로 283

© 17738,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Tel: 031-610-4811, Fax: 031-610-4819

E-mail: bmcho11@daum.net

상이다.¹⁰ 한편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보장구 급여 품목에 제외된 보장구는 그 품질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품질 관리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장구가 꼭 필요한 사용자가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³ 이는 경제적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활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재활보조기구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볼 때, 등록된 장애인이라든가 보장구 급여 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재활보조기구를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구 급여제도의 품목과 비급여 품목 및 제외된 품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론

1) 보장구 급여제도

(1) **급여 품목 현황:**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전에도 보장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지만 전쟁 이후 장애를 가진 전상병들에게 의수족 · 보조기, 휠체어 등을 지급하여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들은 보철구(補綴具)나 보장구(補裝具)라 지칭하였다. 이 용어는 일본 의지학(義肢學), 장구학(裝具學)에서 유래한다. 보장구를 파자(破字)하면 보(補)는 보철(補綴)에서 장구(裝具)는 장신구(裝身具)에서 파생하였다. 보철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철함”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신체를 보충 한다”라는 의미로 그 예는 의족(prosthetic leg)이나 의수(prosthetic arm), 의안(prosthetic eye), 의비(prosthetic nose), 의이(prosthetic ear), 의치(prosthetic tooth) 등이 있다. 귀걸이와 팔찌 같은 몸에 치장을 하는 것을 장신구(裝身具)라하며, 신체에 걸쳐 신체를 보호하거나 기능 증진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착용한 것을 장구(裝具)라 한다. 그 예는 보호 장구, 보조기, 보조도구, 보조기기, 보조기구 등이 있다. 위 예시 중 보조도구는 기계적 장치가 없이 신체에 착용하여 인체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양치할 때 칫솔이 손에 고정되도록 손잡이에 벨크로(velcro)를 부착해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보조기와 보조기구는 기계적 장치 등이 있는 보청기 등이 그 예이다. 정부 정책과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보장구가 재활보조기구로 그 다음은 장애인보조기구 그리고 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한 이래 1997년 4개 종류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시작으로 지팡

이, 의지 · 보조기, 휠체어, 안경, 보청기 등 12종으로 늘렸고, 이후 의지 · 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 등 17종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¹ 1997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63개의 품목이 의지 · 보조기와 관련된 품목이고 기타 장애인 보조기구는 14개 품목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³

정부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정책을 통해 1999년에는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생활용품 2종(TV자막수신기, 음성손목시계),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보조기구(욕창방지용 매트, 정형외과용 구두)를, 2012년에는 12종(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탁상시계 및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으로 확대하였다.⁵ 이에 대해 2000년에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 및 기준 · 규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2002년 9월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⁵ 위 품목 고시 규정은 재활보조기구를 기능 중심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로 나누고, 인공호흡기 등 231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의 종류와 명칭 및 통일된 분류체계를 세웠다.^{5,7} 2005년에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 3종을 보험급여로 추가하였다.⁵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06년에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재활보조기구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의 ISO9000 체계에 맞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는 등 316종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였다. 보장구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조항을 확대하여 2015년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을 제정하였다.¹⁰ 한편 보조기구 수리 및 사후관리도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보조기구의 수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42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범위, 내용과 관리방법 등이 다르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하고 있어 보조기구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¹¹ 또한, 재활보조기구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장애범주가 추가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종류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리 체계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⁸ 또한, 김동기는⁹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 886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제도의 건강권에 대해 평가(5점 척도)하였고 장애인보장구 종류의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모두 2.5점을 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는 사용자가 장애인보장구 제도에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2) 급여제도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는 그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용어나 범위와 품목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를위한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산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3,11}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 관련 법제도는 여러 부처가 각기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조차 어떤 법률에 따라 적용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보장구 신청방법도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급여제공자 및 수급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보장구 신청방법이 서로 달라 지급이 늦거나 제 때 신청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지·보조기기사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보조기구 또는 보장구를 제작, 수리, 판매, 취급하는 의지·보조기기사사의 직무가 분명하지 않아 보조공학사, 의료기기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충되고 있다.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장구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관한 직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배타적 직무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요구된다.

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에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로 개정하였다. 여기서 의지·보조기의 품목(종류)은 전문가들 사이에 일치하지만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밖에(기타) 보조기가 그 예이다. 이수연은³ 기타 보조기(보장구)를 보조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고, 치료수단으로 사용되는 치료용 보조기, 치료 후 변형이나 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활 보조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일

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생활, 이동 등의 모든 활동을 돕는 보조기구를 재활 보조기구라 한다.⁶ 보조기구 품목으로는 크게 개인 치료 용구, 훈련 용구, 의지·보조기, 개인위생·보호용구, 이동기기, 가사용구, 정보통신 신호기기, 조작용구, 환경 개선 기기 그리고 레크레이션 용구 등으로 나뉜다.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의지 및 휠체어 등 77개 품목을 지원 하고 있다.³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 보조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이 편성되어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료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인보장구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장구 보험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급여기준액, 내구연한(耐久年限) 및 대상품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⁹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외 품목 및 비급여 품목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절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이 손가락 의지(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의 급여를 받고자할 때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을 통보한 건강보험공단 등록 보조기기 업체에서 제작 구매 후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사서명 기재)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손가락 의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험급여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예로 근래에 전문 자격이 없거나 학력이수 자격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종사자가 3D프린터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보장구가 있다. 그 품목(종류)은 다음과 같다. 소이증 대상자의 의이(prosthetic ear),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일부분이 절단된 대상의 손가락 의지, 외장 의안(prosthetic eye)의 외피와 의안 대상자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의안, 화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는 대상자의 피부 의지, 실리콘 커버, 실리콘 슬리브, 의비(prosthetic nose),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 등이 있다. 이것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급여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가 이루어

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보조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에 보급되고 있는 맞춤형 로봇 등과 같은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의 경우 가격이 비싸 당장 급여품목에 포함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사고 등에 따라 장애를 가진 재활대상자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지만 급여 품목에 제외된 보장구 특히, 치료용 보조기가 비급여 품목으로 되어 있다.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이용자도 재활에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장구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비급여 보장구의 구입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보장구 급여 품목에 제외된 보장구는 품질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그 품질 관리가 어렵다. 이로 인해 보장구가 꼭 필요한 이용자가 낮은 품질의 보장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활에 필요한 보장구가 오히려 재활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등록된 장애인이더라도 보장구 급여 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전문 인력과 직무에 관한 명확한 고시가 요구된다. 둘째, 보장구 급여 제외 품목을 매년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한다. 셋째, 품질관리를 위해 비급여 품목과 보장구 수리비 등도 급여에 포함한다. 넷째, 보장구 급여 신청을 의지 · 보조기기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한다. 다섯째, 여러 부처가 각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급여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보장구) 전문 인력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전문 인력인 의지 · 보조기기사 가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직무를 다루어야 한다. 그 직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0년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 및 기준 · 규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제정한 즉,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이 이어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구(보장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일시적인 손상으로 인해 치료용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를 그 직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 · 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의 ②항은 다음과 같다. ②의지 · 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 · 보조기기사(補助器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 · 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 · 보조기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위항은 의지 · 보조기 제작에 따른 책임과 보험 급여 부담 청구 등의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한

다. 의지 ·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은 제72조에 따른 의지 · 보조기기사 이어야 하고, 제작 · 수리 · 판매 또한 의지 · 보조기기사가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의 편의 증진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장구 전문 인력에 대한 직무 분장과 더불어 배타적 직무를 명시하여 전문성과 보장구 품질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2) 보장구 급여 제외 품목 및 대상품목을 매년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그리고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동기의⁹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이용당사자, 학계, 제조업체 및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장구 보험급여 수가위원회 또는 현재 활동 중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보장구 급여 제외 및 대상 품목을 조정한다. 또한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3) 건강보험 효율과 품질관리를 위해 비급여 품목과 보장구 수리 등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금희는⁵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교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품 품질만족도와 교부금액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는 재활보조기구 제품의 품질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³ 이에 반해 김동기는⁹ 보장구 마모와 고장의 특성 및 장애인의 신체적 변형을 고려하여 내구연한을 단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애인이 보조기구 사용을 포기하는 이유는 보조기구가 고장나거나 수리를 못해서와^{12,13} 보조기구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리지원품목으로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기구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공진용 등¹³의 결과와 같이 보장구 수리비 등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유지 ·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여 착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의 수리 및 비급여 품목 등을 보장구 급여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유지 · 관리를 통해 경제적 효율을 배가할 수 있다.

(4) 장애등급이나 획일적 기준에 의한 급여가 아닌 개인별 맞춤형 급여 또는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각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급여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결론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과 더불어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일상생활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 급여되고 있는 보장구 품목과 비급여품목 및 급여에서 제외된 품목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전문 인력과 직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장구 취급 및 품질관리에 전문성을 유지한다. 사고 등에 따라 일시적 장애를 가진 재활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을 받지 못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치료를 위해 재활보조기구를 임상에서 처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치료용 보장구를 급여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장구 보험 수가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품목은 자비로 구입, 구매하고 있다. 보장구 급여 품목에서 제외된 보장구 또한 그 품질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급여 받지 못하는 보장구를 조사하고 비급여 품목 보장구를 급여 품목으로 지정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보장구 수리비를 급여에서 확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화한다. 한편 법률과 제도에 따른 상이한 신청절차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REFERENCES

1. Kwon SJ.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ssistive Devices Use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1;55:17-26.
2. Moon IG.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upply of Rehabilitation Aid Tools for Disabled.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4;1-92.
3. Lee SY.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olicy toward Assistant Devices for the Handicapped. The Experience and Mentality of Assistant Device User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5;1-108.
4. Jung MY, Kim JR, Yang NY, Park HY, Yoo IG, Yeum

- HY. A Survey of Actual Use and Demand of Assistive Technolog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Not Received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t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09;13(2):25-49.
5. Lee G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ctual Usage and Life Satisfaction of Rehabilitation Assisting Devices. Focused on the disabled using rehabilitation assisting devices in Gwangju.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2008;1-69.
6. Lee TS. A study of the Quality Management Method for Rehabilitation Assistive Devic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 Management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2011;1-47.
7. Jung SW. Present quality control and development plan study of assistive produc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Management and Research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 Techn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2016;1-113.
8. Lee GM, Lee JH. Improvement Plan about Delivery System and Current State on Repairs Servic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Disabled.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2016;59(4):43-61.
9. Kim DK. A Study on Health Insurance benefits of Assistive Devices and Improvement Methods. Institute for Local Government, Dong-Eui University. 2017;33(2):1-23.
10. Lee JH. An Analysis of the Purchasing Behavior of the Disabled Assistive Technology and the Optimal Payment Plan for Health Insura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2019;1-80.
11. Kim IS, Oh DY, Kwon SJ, Nam SH, Park JY. The Stud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Managing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1;15(1):121-147.
12. Kim EJ, Kim SY. Suggestions About Current Status of Supplying Service and Using Status of Assistive De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2010;2(1):1-11.
13. Kong JY, Kwon SJ, Park JY. Analysis of Status about Repair Suppor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cusing on Mobility Devic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3;17(3):253-271.